

학생활동 지원 규정

제정 2019. 02. 11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의 학생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인성과 교양을 함양하게 하고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학생활동은 다음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

- ① 학·예술 분야 역량증진을 위한 학술제 및 축제, 방송제, 졸업작품전 등의 행사
- ② 학생 간 교류증진을 위한 MT, 체육대회 등의 행사
- ③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·기여를 위한 학생 봉사활동
- ④ 우호증진과 자기개발을 하는 동아리 활동
- ⑤ 학생자치기구가 개최하는 행사
- ⑥ 기타, 대학이 시행하는 학생 참여 교육프로그램 등

제3조 (지원범위) 학생활동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① 학생활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학생 단체 활동 안전 관리규정에 따른다.
- ② 대학이 시행하는 학생 참여 프로그램(학내 경진대회, V3 자기개발 및 Man of Mission 프로그램, 정주형기숙사 프로그램 등) 지원
- ③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사전 교육 및 봉사활동 기관 소개
- ④ 학생활동의 경비(금액의 지원 여부와 규모는 총장이 결정)
- ⑤ 활동 공간 지원

제4조 (지원체계) ① 학생활동의 지원에 관한 업무는 학생복지처에서 총괄한다.

- ② 세부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.
- ③ 학생활동의 지원이 필요한 학과와 행정부서에서는 사전에 학생복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 (학생활동의 승인) ① 학생활동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생복지처장의 승인 후 총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학생행사 시 안전을 위해 반드시 행사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행사를 진행 할 수 있다.

제6조 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